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자연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물품 지원관련 질의회신

1. 우리 위원회에 2018. 8. 9.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예산으로 폭염 대응물품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문의 경우 폭염종합대책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인지, 지원물품의 금액이 그 시책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는 해당 지침을 수립·시달한 관계 기관에서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을 준수하여 폭염 대응물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